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616,518,000	18,495,540
일반회계	583,932,000	17,517,960
특별회계	32,586,000	977,580
공기업특별회계	28,410,000	852,300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138,000	334,140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272,000	518,160
기타특별회계	4,176,000	125,2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1,000	24,03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1,000	4,53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27,000	12,810
주택사업특별회계	716,000	21,48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69,000	41,070
치수사업특별회계	350,000	10,5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62,000	10,8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37,3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